

독일판례 2

반박문의 자수가 원문기사의 자수와 상응하고,
편집상 동일한 구역에 인쇄했더라도 반박문을 현저하게
작은 활자로 한 경우에는 원문보도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칼스루헤 고등법원 1992. 11. 6.자 판결
-15 U 249/ 92 사건

적용법조

바덴- 웨르텐부르크주 언론법 제 11 조

판결요지

1. 이의가 제기된 원문보도가 단지 잡지의 표지에만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반박보도문도 단지 그 잡지의 표지에만 게재하는 것으로써 피해자의 청구는 실현된 것으로 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문구를 편집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잡지표지에 게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설사 반박보도문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청구가 실현된 것은 아니다.

2. 반박보도문을 전달하는 원고의 범위(즉 자수)가 원문기사의 범위와 상응한다고 할지라도, 그 반박문을 현저하게 작은 활자로 편집상 동일한 구역에 인쇄한 경우에는, 그 반박문의 게재가 원문보도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사실개요

가처분 신청인(이하 원고라 한다)은 언론법상의 반박문의 게재를 청구하고 있다.

가처분 피신청인(이하 피고라 한다)이 발행하는 (X)라는 잡지의 1992: 5. 14 자 제 21 호 잡지에는 그 표지에(즉 잡지의 제호 아래 중간부분의 왼쪽에) 『Caroline 공주: 그녀의 4 번째 아기에 대한 기대』라는 표제가 게재되어 있고, 다시 위 잡지의 4 면 및 5 면에는 『Monaco 전체가 Caroline 공주에 대한 커다란 근심에 싸여있다. 위 Caroline 공주가 또다시 임신을 함으로써, 그녀의 생명이 위협 받고 있다』라는 제목하에 위 원고와 프랑스의 영화배우 Vincent linden 과의 관계에 대한시중의 소문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2. 6. 3 자 서신을 통하여 아직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신의 잡지의 표지에 다음과 같은 반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즉 「반박문 : 1992. 5. 14 자 (X)잡지의 제 21 호에는 『Caroline 공주 그녀의 4 번째 아기에 대한 기대』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이에 대하여 나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즉 나는 4 번째 아기를 임신하고 있지 아니하다. Monaco, 1992. 5. 22. Monaco 의 공주 Caroline」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2. 6. 17 자 위 잡지의 제 20 호의 표지에 (그런데 위 표지에는 잡지의 제호 외에도, 5 장의 사진 및 각각 크기를 달리하는 8 줄의 표제가 게재되어 있었는데), 밑에서 2 번째의 표제로서 『Caroline 공주는 아기를 임신하고 있지 않음. 반박문은 제 6 면 참조』라고 게재하고, 다시 잡지의 제 6 면에는 최하단의 왼쪽에 작은 글씨로 반박보도문과 함께 원고의 사진 및 Caroline 공주 나는 4 번째의 아기를 임신하고 있지 아니하다』라는 제목을 붙이고, 이어서 편집자가 작성한 내용으로서 (Monaco 의 Caroline 공주는 우리에게, 그녀는 4 번째의 아기를 임신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통지하여 왔고, 우리는 이를 서면으로 접수하였다)라고 기재된 상자가 기사가 게재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내용의 게재는 원고의 반박보도청구의 내용에 부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이유

피고가 1992. 6. 17 자 제 26 판에 위와 같은 내용의 게재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1964. 1. 14 자(GBl. 11) 독일 바덴-뷔르템부르크주 언론법 제 11 조에서 규정하는 원고의 반박보도청구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한 것이 아니다.

위 법 제 11 조 제 3 항 제 1 문의 규정에 의하면, 반박문은, 원문보도가 게재된 부분과 동일한 부분에 원문보도와 동일한 크기의 활자로, 그리고 더 보태거나 삭제함이 없이 그대로 게재되어야 하고, 나아가 독자편지의 형식으로는 게재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의가 제기된 기사가 실린 잡지의 표지에 4 번째 아기에 대한 기대』라는 표제를 붙임으로써, 독자들에게 대하여 원고가 이미 4 번째의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심어 주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위 잡지의 2 페이지에 기재된 목차에서 나타난 위 잡지 4 및 5 페이지의 기사에 의하면, 이는 단지 위 원고의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또 한번의 임신에 의하여 야기될지도 모를 위험성에 관하여, 국외자로서 품을 수 있는 추측을 기재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이 이미 임신이 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주장되고 있지도 아니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실상의 주장은 단지 표지에만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반박문도 역시 반드시 표지에 게재되어야만 원고의 청구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표지에의 게재만이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seitz/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in Presse, Film, Punk und Fernsehen, NJW-Skriitenreihe Heft 33, 2.Aufl. 1990, S.143 Rd-Nr. 357; 마찬가지로 Löffler /Ricker, Handbuch des Presserechts, 2. Aufl. 1986, S. 147 Kap. 27 Rd.-Nr. 2, LG Hamburg Arch PR 1973/106 판결 인용).

위와 같이 잡지의 표지에 이러한 사항을 기재 한다는 것은 피고에게 지극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위 반박문을 포함하고 있는 잡지의 판매고를 해치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위와 같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이익은 모두 피고 자신의 행위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잡지 제 26 호의 표지에 게재된 『반박문』이라는 표시는, 원래기사인 『Caroline 공주』라는 표제보다 높이가 반 밖에 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원문기사에 있어서의 『그녀의 4 번째 아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표제보다는 그 크기가 3 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며, 반박보도로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잡지 26 호에 게재된 『Caroline 공주는 임신중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표제는 편집자가 이를 작성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반박보도청구를 만족시키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아가 위 잡지의 제 26 호 제 6 면에 게재된 반박문 조차도, 최하단의 왼쪽에 치우쳐서, 그리고 타자로 적어진 원문을 거의 2 분의 1 로 축소해서 게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기사의 윗부분에 있는 표제, 즉, 『Caroline 공주 : 나는 4 번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편집자가작성 한 기사 즉, 「Caroline 공주는 우리에게……을 통지하였다」라는 표현은, 마치 원고가 스스로, 그리고, 본인이 원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한 것과 같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고는, 그의 반박문이 위와 같은 형식으로 게재됨으로써, 마치 피고가 피고의 의사에 반해서 -무보수의- 자유로운 협조자로서 원고의 반박문을 접수한 것과 같이 해석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형태의 『반박문』이라는 표시는, 문제된 잡지의 표지상의 표제에 적용되는 「동일한 활자」라는 요건에도 합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편집상 허용될 수 있는 추가의 범위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즉 반박문의 내용이, 인쇄기술적으로 편집상 조작된 보도내용에 의하여 「압도당하게」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Seitz/Schmidt /schoener, a.a.O., S.149 Rd.-Nr.371 참조) 그 밖에도 이와 같은 편집자가 작성 한 기사-원문보도와 동일한 판에 있어서 편집자에 의한 의견 표명에 관해서 적용되는 「주를 다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에도 위배되어 - 원문기사의 주제에 대한 사실상의 진술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측 가치판단 및 주제에 속하지 아니하는 진술도 역시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위 잡지의 제 26 호에 공표된 반박문의 게재는, 앞에서 상세히 본 바와 같이, 언론법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또다시 재차의 위 요건에 맞추어서 그의 반박문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Seitz/schmidt/schoener, a.a.O., S.152 Rd.-Nr.377: LOffler /Ricker, a.a.O., Rd.-Nr.10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반박문의 재차 게재청구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이다.